

<후속보도자료>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자치·민주주의 역행!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을 철회하라!

<일정>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전북교육청 브리핑실

<주최 단위>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가)

성평등활동기획단바스락,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문>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자치·민주주의 역행! 전북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을 철회하라!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년 12월 27일 각종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입법예고에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악안이 포함되어 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학생인권 정책 등을 심의하고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학생들이 인권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해 인권보장의 논의와 결정하고, 학생들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기구들에 대해 개악하는 것은 자치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이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보장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며, 학교 안의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인권보장 없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역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은 주체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선언과 존중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인권정책 마련과 권리침해 예방 및 구제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심의위를 비롯하여 학생참여위, 학생인권 전담부서 구성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개악되어 학생인권심의위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기준을 조례에서 명문화 하더라도 그것은 말뿐인 인권이 될 뿐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며,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학생참여위원회를 폐지하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청은 최근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의회'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참여위와 학생의회는 성격과 구성이 다르다. 학생참여위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주체인 교육청이 권리의 주체들에게 직접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었다. 반면 학생의회는 기능 중 하나로서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제안'이 있으며, 분과위원회로 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규정된 학생참여위와 달리 학생의회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구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학생참여위는 위원 50명을 모두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하며, 소수자 의견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회만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학생의회의 경우 학생회 추천과 교육지원청의 추천인원이 40명이고 도교육청의 공개모집이 1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선 학생의 의견이 학생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참여위는 학생의회와 별도로 필요한 기구다.

무엇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지속해야 한다. 2021년도 전국의 교육청 대상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두발을 비롯한 복장 규제(치마 교복 강제 등)와 같은 용의복장 제한 생활규정이 있는 전라북도 학교는 100~200여개의 학교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상관없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조차 상당수 학교에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학생인권의 현재 주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거석 교육감 인수위는 ‘학생인권에 집중한 나머지, 교직원 인권, 수업권, 학생생활 지도권은 위축되지 않았나 엄중히 살펴야 할 때’라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이분법 아래 놓고 누가 더 이득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분쟁을 조정해야 할지로 좁혀서는 안 된다. 교육주체들의 인권 보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등 각각의 교육주체의 권리 및 권한은 각각 다른 성격의 조치와 법적·행정적 구조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하고 도교육청이 최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교육인권조례로 인해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한다면 큰 오산이다. 각각에 주체들에 대해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권리 보장 내용이 없이는 선언적인 조례에 그칠 뿐이다.

전북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학생과 청소년, 지역의 학교 구성원들과 도민들의 염원 속에 2010년부터 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이한다. 학생인권보장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서거석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조례 개악을 강행한다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규탄과 마주할 것이다. 우리는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개악안이 철회되도록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교육시민사회·청소년들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23년 1월 9일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첨부자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021년 11월 학생인권 실태조사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두발의 길이 또는 모양, 색을 제한하는 학칙	7 (2020 기준)	43	288
춘추복·하복·동복의 착용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교복 위 겹옷 착용을 금지 또는 착용기간 제한하는 학칙	4 (2020 기준)	통계 미보유	106
치마 교복을 강제하는 학칙	0	7	130
치마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칙	0	206	미파악
속옷의 착용 여부, 색 등을 제한하는 학칙	0	28 (2021 내 개정 예정)	미파악

[첨부자료] 교육시민사회법률단체의 2021년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중단 촉구



교육희망 news.eduhope.net

'학교구성원 인권' 말고 '학생인권' 조례 제정해야

인천시의회 본회의 23일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안' 심의
교육시민단체 삼주체 권리 모두 제대로 담지 못했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야

기사입력시간 : 2021/03/22 [18:05:00]

김성란 기자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안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조례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제공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 안 모든 주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주장하지만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학교가 인권친화적 공간이 되길 바란다면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 현실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세 주체의 권리를 같은 범주에 두고 나열하고 있어 교직원의 노동권 일부와 학부모의 참여권 정도가 보장될 뿐 세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 학생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 자치기구인 학생회에 대한 조항도 찾아 볼 수 없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 하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교장이 학습과 안전을 위해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물론 심의기구인 인천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 외에는 학교인권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체계도 없다.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조례안으로는 세 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없으며 조례안이 학교에서 책임있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직접 명시한 차별 금지 사유가 질병과 장애로 한정되는 등 차별금지 사유와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인 인권 증진 문화를 조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인천시교육청은 이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학생인권과 교직원의 노동권, 학부모의 참여권 등을 각각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시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아동인권위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게 되는 차별과 폭력의 상당수는 학교 설립자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는 노동자로서 교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나 보호자의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 문제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학교현장에서 약자인 학생의 인권침해 문제를 직시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시작이 아닌 명백한 후퇴가 될 것"이라는 말로 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첨부자료] 청소년 당사자 기자회견 발언

- 이름 (청소년, 전라북도 학생참여위원회 전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지역의 청소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북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이었던 지난 해 어느 날, 저를 비롯한 학참위 위원들은 갑작스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저희 학참위가 이번 기수 해단을 끝으로 사라지고, 학생의회라는 것이 새로 생겨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육청의 결정을 규탄하며 하루빨리 개악안 철회를 촉구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적에도 학생인권조례는 존재했지만, 저는 그 3년간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저에게는 아침에 슬리퍼를 신고 체육복을 입은 채 등교하면 벌점을 받고 옷을 뺏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참위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조례를 처음으로 고스란히 접했고 배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학생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또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곤 했습니다. 운영 실적이나 활동이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저는 학참위에서 활동하는 지난 1년간 그제야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참위는 다양한 지역, 학교, 연령대 등을 가진 학생이 모여 저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그 대신 학생의회를 내세운다는 것은 학생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와 저희의 목소리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추첨으로 구성하였던 학참위가 학생회 추천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의회로 바뀌면 과연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학참위와 학생의회는 목적과 성격이 다른 만큼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1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북의 학생인권 상황은 열악한데, 교육감과 교육청은 어째서 학생인권 때문에 다른 주체들의 인권이 덜 보장받고 있다고 말합니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조차 학생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법에 명시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육감과 교육청에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여 학생참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기자회견 사진

